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6월 1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2005. 12. 23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긴급지원복지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2조에 동 업무내용을 추가
(안 제2조제1항제5호)

III. 검토의견

-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이외에도 소득상실,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생계지원·의료지원 및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7739호, 2006. 3. 24 시행)이 제정된 바 있으며,

동 법 제12조에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에 해당 업무를 추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의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 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목적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시행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위해 민·관 대표자와 실무자가 공동 참여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능이 중첩되는 위원회는 가급적 통합하여 중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 참고로 운영중인 사회복지협의체는 공동위원장(2명)을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위원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명단 별첨>

계	공공 부문	보건 의료	종교계	학계 전문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봉사 단체	시민 단체
20명	3명	4명	4명	2명	3명	1명	2명	1명

IV.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정 2005. 12. 23, 법률 제773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긴급지원기관) ①이 법에 의한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 등)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당해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④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조례 제632호)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3.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4. 구청장이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건의 및 의결 등

②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위원 현황

연번	직 위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현 직	전화번호
1	위원장	공공부문	김충용	39.02.14	남	구 청 장	731-0333
2	"	보건의료	임준석	56.05.12	"	종로구약사회 회장 (수도약국)	742-8626 016-747-8657
3	부위원장	장애인 복 지	오옥자	54.05.01	여	라파엘의 집 원장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739-7020
4	당면직 위 원	"	조성린	48.4.21	남	생활복지국장	731-0337
5	"	"	김윤수	59.02.23	"	보건소장	731-0422
6	위촉직 위 원	종교계	김남선	54.09.11	여	구세군대한본영 사회복지부장 (한국기독교봉사회 회장)	739-5141
7	"	공공부문	김복동	49.11.08	"	구의원	741-7200 011-216-6264
8	"	학 계 전문가	김정우	55.1.23	남	성균관대학 교수 (사회복지학)	760-0635 019-528-3779
9	"	보건의료	김정찬	45.06.14	"	종로구의사회 회장 (김비뇨기과)	2266-7446 011-792-8572
10	"	종교계	도문스님	59.06.29	남	조계사 부주지 (조계사 사회국 정진용)	732-2115
11	"	봉사기여	박금출	56.3.1	남	치아모 회장	745-5138
12	"	공공부문	박종식	43.06.23	"	구의원	745-0120 011-9948-0950
13	"	종교계	배성산	38.12.01	"	종로구교구협의회총무 (서울교회 목사)	736-3698 737-3698
14	"	시민단체 (경실련)	위정희	67.01.17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 사무국장	765-9731/5 741-8566
15	"	학 계 전문가	이금용	63.08.04	"	상명대학 교수 (가족복지학)	2287-5345 019-531-5345
16	"	보건의료	이동진	52.02.21	"	종로구한 의사협회 회장 (광원한의원 원장)	762-0578 011-381-2007
17	"	아동복지	이명수	36.10.14	여	송석복지재단 이사장 (불우이웃돕기, 아동복지지원)	927-8830 927-8831
18	"	보건의료	이수태		남	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지사장(오정섭)	2171-1110 019-290-2291
19	"	자원봉사	황명희	51.06.18	여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봉사관장	2252-3158 2238-3103
20	"	종교계	이호영	67.07.22	남	실무협의체 위원장	363-9199 011-760-4249